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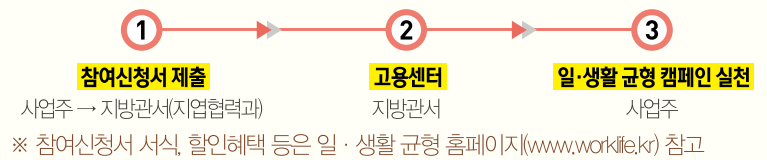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와 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

핵심 3분야	오래일하지 않기	- 정시퇴근하기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하게 일하기	- 똑똑한 회의·보고 - 명확한 업무지시 - 유연한 근무
	제대로 쉬기	- 연가사용 활성화 - 건강한 회식문화 - 설 권리 지켜주기
기본과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등재, 조달청 입찰 관련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외식, 여가, 여행 등 할인혜택 제공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1 시간선택제 제도 도입이나
알가정 양립제도 도입이 어려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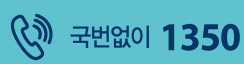
노사발전재단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 보세요!

- 시간선택제 제도 운영방안 및 일가정양립제도 설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 부담

2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온라인 접수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공고 페이지 에서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서 직접 입력 및 구비서류 업로드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 02-6021-1167, 1187

전국고용센터 연락처



권역별	고용센터명	연락처	권역별	고용센터명	연락처
서울	서울	02-2004-7910	대구·경북	대구청	053-667-6033
	서초	02-580-4973		대구서부	053-605-6464
	서울강남	02-3468-4708		대구달성	053-605-9518
	서울동부	02-2142-8434		칠곡	054-970-1907
	서울서부	02-2077-6095		포항	054-280-3056
	서울남부	02-2639-2333		경주	054-778-2516
	서울북부	02-2171-1803		구미	054-440-3364
인천·경기	서울관악	02-3282-9384		영주	054-639-1146
	중부청	032-460-4814	광주·전라	문경	054-559-8231
	인천북부	032-540-5745		안동	054-851-8062
	인천서부	032-540-2050		광주	062-609-8658
	부천	032-320-8952		광주광산	062-960-3209
	김포	031-999-942		전주	063-270-9209
	의정부	031-828-0893		정읍	063-530-7501
강원	고양	031-920-3988		남원	063-630-3917
	수원	031-231-7857	대전·충청	익산	063-840-6523
	성남	031-739-3160		김제	063-540-8404
	안양	031-463-0768		군산	063-450-0638
	안산	031-412-6967		목포	061-280-0541
	평택	031-646-1264		해남	061-530-2911
	춘천	033-250-1930		순천	061-720-9169
부산·경남	강릉	033-610-1913		여수	061-650-0140
	속초	033-630-1909	제주	광양	061-798-1902
	원주	033-769-0960		대전	042-480-6020
	태백	033-550-8633		공주	041-851-8507
	삼척	033-570-1906		세종	044-861-8992
	영월	033-371-6254		논산	041-731-8601
	부산청	051-860-1927		청주	043-230-6793
충청	부산동부	051-760-7210	충청	천안	041-620-7444
	부산북부	051-330-9953		충주	043-850-4032
	창원	055-239-0965		제천	043-640-9322
	울산	052-228-1926		보령	041-930-6259
	김해	055-330-6436		서산	041-661-5614
	양산	055-379-2431		제주	064-710-4462
	진주	055-760-6753			
	통영	055-650-1814			

발행일: '19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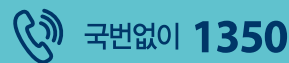
www.moel.go.kr
www.el.go.kr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신규 일자리 창출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돼요!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근로자

-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임신·출산·육아도
함께할 수 있어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그 어느 쪽도 포기하기 어려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모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

- 공부하는 동시에 일이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도 됩니다.
- 경제활동 지속으로 생애소득이 증가합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에도 도움이 돼요!

기업 생산성 향상

-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근로자의 업무피로도가 낮아져 근로손실(산업재해 등)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실업자)에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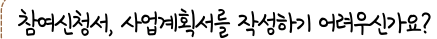


- 1 무기계약 체결
- 2 4대 사회보험 가입
- 3 주 15시간~30시간 근로
- 4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 5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 6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7 전일제 근로자 채용 시, 전일제 전환 기회 우선 부여

**지원내용** (19. 1. 1. 시행)

신규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월 7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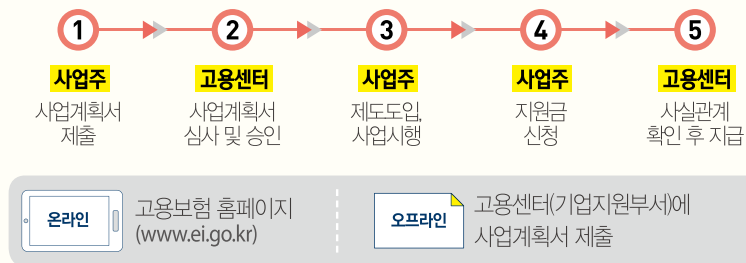
구분	3개월 지원액	1년 지원액
중소·중견기업	210만원	84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720만원





- 1 안내책자 다운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서식 다운로드 *서식제목: [고용장려금]

신청절차 및 방법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임신·학업(자기계발)·육아·학업·퇴직준비·건강 등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의 경우
일 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지원합니다.



- 1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 (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 2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경우 35시간 이하로 가능
- 3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일 이상 누락시 지원 제외)
- 5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지원금 신청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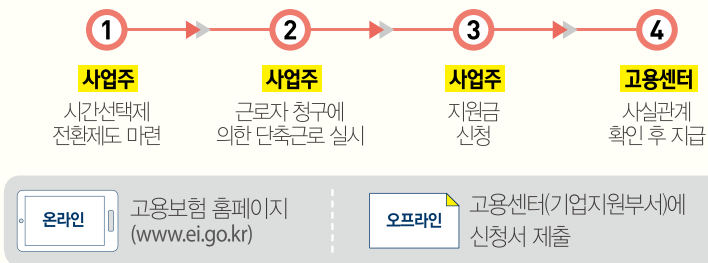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

-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보전확인 후 사후지원)**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전환 ▶ 월 최대 40만원
- 주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전환 ▶ 월 최대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전환 ▶ 월 최대 40만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에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인건비의 80% 한도)

신청절차 및 방법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게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 1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 규정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 2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3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유형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 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지원내용**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30% 한도 내 70명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50명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 1 (지원대상시설 투자)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 개선, 교체, 구입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지원

※ 재택·원격근무자용 통신장비 및 설비, 건물·토지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 2 (재택·원격근무 활용) 활용계획 인원의 50% 이상의 근로자가 제도 활용
- 3 (사용의무기간 준수) 지원받은 날로부터 4년 동안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금지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